

#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0. 4. 12(월)  
기획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0. 3. 23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 다. 회부일자 : 2010. 3. 23
- 라. 상정일자 : 2010. 4. 6.(제183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 제안설명 : 기획관리실장 정병일
  - 검토보고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형섭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가. 제안이유

-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개정 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정보화 기본계획 등에 관한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지역정보화위원회를 신설(안 제6조)

- 정보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운영 제시 및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안 제10조)
-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 추진(안 제14조)
-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유상 또는 무상 지원 등 정보격차해소의 추진(안 제15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 동 조례안은

-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 및 내용이 변경 시행(법률 2009. 8. 23, 시행령 2010. 3. 19) 됨에 따라
- 현행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동 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임.

#### ○ 개정안의 주요내용

##### ▶ 정보화 심의·조정기능 강화(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함.
-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정보화 추진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정보화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정보화위원회」위원 구성은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 정보화의 추진 등에 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개정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하고, 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사항 등을 정하고 있음.

- 정보통신망 운영에 있어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과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신설규정(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정보화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인터넷 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 계층에 대한 통신비 등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정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의 개정에 대하여

- 정보화 관련 상위법의 개정시행과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하여 개정한 것으로

최근 정보화 추세를 반영하여 현행 정보화 촉진업무 중심에서 지식·정보의 공유·활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시

- ▶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방안과
- ▶ 최근 발생되고 있는 디도스(DDos) 등 사이버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타시도 지역정보화 관련조례 제(개)정 현황

2010.3월 현재

시 도	조 례 명	촉진조례 제(개)정일자	조례개정 일 정
서울	서울특별시 정보화촉진조례 서울특별시 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09. 3. 18	'10. 1. 7 공포
부산	부산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 부산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08. 5. 7	'10. 3
대구	대구광역시 지역정보화추진조례	'05. 1. 10	'10. 3
광주	광주광역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광주광역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08. 10. 31	'10. 3
대전	대전광역시 정보화촉진조례	'07. 10. 5	'10. 3
울산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08. 10. 16	'10. 3
경기	경기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경기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09. 3. 12	'10. 3
강원	강원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07. 5. 4	'10. 1
충북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06. 12. 12	'10. 3
충남	충청남도 정보화추진조례	'09. 4. 30	'10. 3
전북	전라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라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09. 10. 5	'10. 3
전남	전라남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라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08. 7. 15	'10. 상반기
경북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경상북도 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시행규칙	'09. 4. 23	'10. 상반기
경남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경상남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09. 8. 13	'10. 3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06. 10. 11	'10. 상반기

#### 4. 질의 및 답변요지

##### < 질 의 >

- 윤지상, 김소림, 이상철, 조남휘 위원
  - 정보통신 지원 예산범위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 사업자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 시에 근거 조항을 가지고 지원해야 할 것임.

##### < 답 변 >

- 정병일 기획관리실장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기가의 80%를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임. 2010년도 사업비는 4억 6,800만원임.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근거 조항을 갖고 시행하도록 하겠음.

#### 5. 토론요지

- 가. 찬 성 : 윤지상, 김소림, 이상철, 조남휘 위원
- 나. 반 대 : 없음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찬성 : 4명)

#### 7. 기타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 임 :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 제2장 지역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
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
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
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
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중독 예방·해소
9. 재원의 조달 및 운용
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인천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위원회)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관리실장

2.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지역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장 지역정보화의 추진

제8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 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공간정보의 구축·활용) ① 시장은 시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컴팩·스마트시티의 추진) 시장은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술을 활용한 컴팩·스마트시티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화 교육) 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장 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4조(정보문화의 창달) 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격차의 해소) ①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5장 보칙

제17조(정보보호) 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인천광역시 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